##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

발의연월일: 2024. 5. 30.

발 의 자: 박정하·이철규·박덕흠

조은희 • 박대출 • 백종헌

송기헌 · 김태호 · 주호영

배준영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좋 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수도권대학 출신이라는 이유 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으며,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들을 재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여 적극

적인 이전지역인재 재유입정책을 실시하고자 함(안 제29조의2제1항 단서 삭제).

법률 제 호

###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2(이전공공기관등의 지	제29조의2(이전공공기관등의 지
역인재 채용 등) ① 이전공공	역인재 채용 등) ①
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	
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공공기관(이하 "이전공	
공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은	
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	
한 지역(이하 "이전지역"이라	
한다)에 소재하는 지방대학	
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	
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	
지역에 있는 「고등교육법」	
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	
한다) 또는 고등학교(「초·중등	
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	
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를 말한	
다. 이하 같다)를 졸업하였거나	
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	
관등의 채용규모, 이전지역의	
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	
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	
한다. <u>다만, 이전지역에서 고등</u>	<u>&lt;단서 삭제&gt;</u>

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 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 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 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~ ⑥ (생 략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